조선 후기의 왕릉 봉안 서책과 원릉의 특징

조 계 영*

1. 머리말
2.『국조상례보편』과 원릉의 부장품
3. 왕릉 봉안 서책의 추이
4. 발인 반차와 어제 채여
5. 원릉 봉안 서책의 특징
6.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의 왕릉은 풍수지리에 따른 吉地이면서 향후 관리와 의례 거행을 고려해 도성에서 백리 이내에 입지하였다. 왕릉은 봉분을 중심으로 한 능침 공간과 정자각을 중심으로 한 제향 공간, 재실을 중심으로 한 진입 공간으로 구분된다. 능침은 국왕의 시신을 모시는 玄宮과 그 위에 쌓은 봉분, 봉분의 하단을 둘러싼 병풍석과 난간석이 중심에 놓인다. 봉분의 앞뒤로는 혼유석과 장명등을 비롯하여 석인과 석수들이 마주 서 있다.

정자각은 왕릉 의례를 거행하는 장소로 산 자가 망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 정자각의 오른편 위에는 신도비나 표석을 보호하는 碑閣이 있다. 정자각과 홍살문 사이에는 御路를 중심에 두고 수라간과 守僕房이 위치하였다. 왕릉의 진입 공간에는 제례를 준비하고 능역을 관리하던 재실과 香大廳, 典祀廳이 있다.

선대 국왕과 왕비의 體魄을 모신 왕릉은 國葬이라는 흉례의 공간이면서 제향을 드리는 길례의 공간이다. 왕릉에 배치된 석물과 건물은 후계 왕이 효를 실천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하는 제사와 함께 6백여 년간 존속되며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여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왕릉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현존하는 유물을 대상으로 관련 의궤를 분석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조선 왕릉에 대한 연구는 능침 공간에 배치한 석물의 종류와 시기, 제작 장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왕릉 조각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1] 제향 공간의 정자각이나 진입 공간의 재실은 복원이 진행되면서 건축사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수라간과 수복방, 어정 등은 현존하는 것이 거의 없어 문헌 기록과 유구를 통해 그 실체를 밝히려고 시도하고 있다.

조선 왕릉의 제도에 대해서는 당시의 정치·사상적인 배경과 논의를 통해 왕릉 정비 과정에서부터 왕릉 조성과 관리에 대한 변화를 고찰하였다.[2] 정자각 전면에 의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조선 왕릉의 필수 요건이라는 새로운 시각의 연구도 진행되었다.[3]

이상과 같이 왕릉에 대한 연구는 외관으로 볼 수 있는 능침 공간의 상부와 제향 공간에 배치한 의물과 건축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조선 왕릉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궁을 실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궁이 석실에서 회격으로 바뀌고 조선후기의 부장품이 축소되었던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4]

현궁은 국왕의 시신을 담은 재궁을 안치하는 正廣과 정광의 앞쪽에 위치하여 부장품을 안장하는 退壙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장품은 국왕이 사후에 머물게 될 현궁에서도 생전의 궁궐에서와 같은 일상을 영위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왕릉에

1) 이를 토대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조선 왕릉 40기에 대한 보고서 『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 9권을 발행하여 왕릉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었다. 조선 왕릉에 대한 연구 성과는 장경희, 2017 「조선 왕릉과 종묘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美術史學』 33 참조.

2) 이희중, 2001 「17,8세기 서울 주변 왕릉의 축조, 관리 및 천릉 논의」 『서울학연구』 17; 정해득, 2013 『조선 왕릉제도 연구』, 신구문화사; 신병주, 2017 『조선왕실의 왕릉조성』, 세창출판사.

3) 강제훈, 2014 「조선 왕릉과 왕릉 의례의 특징」 『韓國史學報』 54.

4) 현궁의 석실과 회격 조성에 대한 연구로는 김상협, 2007 『조선 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안경호, 2009 「조선 능제(陵制)의 회격(灰隔) 조성방법: 장경왕후 초장지(舊禧陵)」 『정신문화연구』 32 참조.

묻는 부장품으로는 明器와 服玩이 있다. 명기에 대해서는 白磁明器와 악기에 대한 고찰이 시도되었으며, 의궤와 『國朝喪禮補編』 등에 기록된 명기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여 정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5] 복완은 『국장도감의궤』에 수록된 도설을 분석하여 면복의 변천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6]

명기와 복완은 국왕이 승하하면 설치하는 國葬都監의 二房에서 담당하였으며, 의궤의 明器秩과 服玩秩에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크기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복완 목록에 의복과 화장 도구 외에 '書册櫝'가 수록되어 있다. 부장품의 하나로 왕릉에 넣은 서책은 '退壙奉安遺書'로 지칭하는데, 그 존재 여부와 실물에 대해서는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영조의 왕릉인 원릉을 중심으로 조선후기의 왕릉 봉안 서책을 고찰하고자 한다. 1776년에 거행된 영조의 국장은 『국조상례보편』에 따라 처음으로 치른 국왕의 장례이다. 본고는 먼저 원릉의 부장품을 『국조상례보편』의 규정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국조상례보편』에서 遺書로 지칭한 서책이 원릉 이전의 17-18세기 왕릉에서 존재하였는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특히 원릉에 봉안한 서책은 정조의 주관으로 마련되어 서책의 선택과 장황, 그리고 發引班次의 彩輿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례를 보여준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규명된 원릉 봉안 서책은 조선후기의 왕릉 봉안 서책에 대한 常例와 변화를 가늠하는 연구로서 기여할 것이다.

2. 『국조상례보편』과 원릉의 부장품

국왕이 승하하면 5개월 내에 발인하여 국장을 치르고 왕릉을 조성하였다. 국왕의 시신과 함께 퇴광에 묻는 부장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병기 ·

5) 이지현, 2000 「조선시대 명기의 연구: 白磁明器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지원, 2006 「조선후기 明器樂器의 시대적 변천 연구」 『韓國音樂硏究』 39; 송진욱, 2015 「朝鮮王室의 明器 기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金明淑, 1983 「朝鮮後期 冕服의 變遷: 國葬都監儀軌 服玩圖說을 통한 考察」 『服飾』 7.

악기 등의 明器가 있고, 의복과 화장에 쓰이는 圭와 冕·佩玉 등의 服玩이 있다. 부장 풍습은 중국 은나라부터 시작되어 실제 생시에 사용하였던 것을 부장하였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형식화되어 갔으며 능 위의 석물에 더 치중하였다.[7]

영조는 명기와 복완 중에서 사치스럽거나 장난감 같은 것과 긴요하지 않은 것의 규모를 줄여 『국조상례보편』에 반영하도록 하였다.[8] 영조가 결연한 의지로 흉례를 개정한 『국조상례보편』에 대해 정조는 三代의 제도를 회복한 것이니 성인이라도 다른 말을 못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평하였다.[9] 이후 『국조상례보편』은 조선후기에 흉례를 거행할 때에 典範으로 활용되었다.

1757년에 영조는 인원왕후의 뜻에 따라 국장의 경비를 1720년 숙종의 국장보다 ⅓을 감축하였다. 이후 1776년에 정조는 영조의 수교에 따라 원릉을 조성할 때의 비용을 1757년보다도 더욱 감축하였다.[10] 정조가 『국조상례보편』의 규정대로 영조의 국장을 거행한 사실은 다음의 글에서도 알 수 있다.

> "왕(영조)은 길흉의 예에 더욱 신중하였고 情理와 儀節에 힘썼다. 『국조오례의』(1474년)의 내용이 혹 고금의 時宜가 달라서 막힌 곳이 많았으므로, 『국조속오례의』(1744년)와 『국조오례의보』(1751년)를 만들었다. 이것은 참작하고 가감하여 한 시대의 기준이 되는 禮典을 편찬하여 완성한 것이다. 또 喪禮는 매번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儀節을 잃기 쉬운 것을 염려하셔서, 『국조상례보편』(1752·1758년)을 편찬하라고 명하여 참고할 때 편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은이나 철 기구들까지도 미리 준비하여 호조에 두도록 하였다. 병신년(1776년)의 국휼 때에 그 예에 따라 행하고 물품들도 그것을 사용하였다."[11]

---

7) 鄭鍾秀, 1994『朝鮮初期 喪葬儀禮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0면.

8) 『영조실록』 권89, 영조 33년 6월 20일 경진.

9) 『弘齋全書』 卷53, 說「事大禮說」.

10) 『弘齋全書』 卷17, 行錄「英宗大王行錄」 丙申 "王於丁丑年仁元王后國恤 春秋已踰六旬矣 小大禮節 靡不躬自看檢 備盡誠孝 於其糜費 仰體聖后之意 一切減削 山陵魂殿所用 比庚子減三分一 皆王御筆受敎也 丙申元陵之役所用 比丁丑尤減 蓋小子遵王之受敎也"

11) 위의 책 "王於吉凶之禮 尤致敬謹 務盡情文 嘗以五禮儀所著者 或有古今異宜 多所窒碍 乃作續五禮儀及補 斟酌損益 編成一代之彝典 又以喪禮 每患倉卒易失儀節 命撰國朝喪禮補編 以便考閱 以至銀鐵器具之屬 預爲措備 藏之度支 丙申國恤 禮則遵行 物亦藉用"

그렇다면『국조상례보편』에서 규정한 왕릉 부장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명기는 귀신이 사용하는 기물이므로 평상시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지만 거친 재료와 작은 크기로 제작하여 부장하였다. 복완은 평소에 착용하였던 것을 쓰며 새로 만들 경우에는 실제의 5분의 1로 제작하였다. 명기와 복완의 제작은 국장을 주관하기 위해 설치되는 국장도감의 二房에서 담당하였다. 따라서『國葬都監二房儀軌』의 '明器秩'과 '服玩秩'을 보면 부장품의 종류와 규모를 알 수 있다. 이외에 부장품으로는 三房에서 담당하는 哀册과 贈玉・贈帛이 있다. 애책과 증옥・증백은 국왕의 승하를 슬퍼하고 위로하기 위해 바치는 예물이다.

『국조상례보편』에 수록된 부장품의 종류와 제작 담당처는 〈표 1〉과 같다.『국조상례보편』의 편찬 이전에 거행된 국장과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나무로 만든 노비와 工人・歌人・鞍馬・散馬를 모두 제거한 것이다. 그릇과 악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종류는 없애고 수량 또한 줄였다.

〈표 1〉 왕릉 부장품의 종류와 담당처(『國朝喪禮補編』 圖說 發引)

부장품	분류	종류	담당처
明器	그릇	簠・簋・籩・豆・笾・瓦甒・爵・香爐・香合・瓦釜・瓦鼎・飯鉢・匙楪	二房
	악기	銅鐘・磁磬・唐琴・瑟・簫・笙・瓦壎・篪・節鼓・柷・敔	
	병기	干・甲・冑・彤弓・彤矢・笮	
服玩	의복・화장 도구	冕・圭・衣・裳・大帶・中單・方心曲領・韠(=蔽膝)・紅襪・赤舃・棺衣・珮・綬・鏡・梳函	
哀册・贈玉・贈帛			三房

〈표 1〉과『영조국장도감이방의궤』(奎13581)에 수록된 원릉의 부장품을 대조해 보면『국조상례보편』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를 대조해보니 의복과 화장 도구의 복완은『국조상례보편』과 동일하나, 명기에 속하는 [甗・酒樽・酒甁・盞・饌楪・蔬菜脯醢楪・匙・筯]의 그릇이 추가로 부장되었다.

의궤의 복완질에는 〈표 2〉와 같이 복완함에 넣는 ②함궤와 ③부장품이 수록되어 있다. 복완함 외에 遺衣函과 几橫・杖橫가 있어 유의와 궤・장을 각기 담았

다. 그런데 복완함에는 복완 외에도 어압각궤와 표신, 그리고 '御製十七卷'과 '小學五卷'이 포함되어 있다.[12] 『국조상례보편』의 규정에 따라 어압각궤와 표신, 어제 17권을 복완함에 넣었는데, 여기에 『소학』을 추가로 넣은 것은 都廳 徐有防이 입시하였을 때에 정조의 하교를 받아 행한 것이었다.[13]

〈표 2〉 원릉의 부장품 석함과 복완 물품

① 퇴광 석함	② 함궤	③ 부장품
服玩函	冕服諸具	冕·圭·衣·裳·大帶·中單·方心曲領·韠(=蔽膝)·紅襪·赤舃·棺衣·珮·綬·鏡·梳函
	梳函	梳貼·木梳·眞梳
	鏡匣	鏡
	御押刻樻	御押刻
	標信樻	宣傳標信 31·問安牌 7·開門標信 5·閉門標信 5·摘奸牌 10·兵曹摘奸牌 1·都摠府奸牌 2·大將牌 2·命招 10·密符 45·加造密符 9
御製函 2部		御製 十七卷
遺書函		小學 五卷
遺衣函		遺衣
几樻		几
杖樻		杖

의궤의 복완질에 의하면 어제와 소학은 복완함 내에 넣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1776년 4월 16일에 병조판서 李徽之가 『국조상례보편』의 수교에 따라 유서를 복완궤에 넣을지 정조에게 여쭈자 그렇게 하라고 한 것과도 일치한다.[14]

12) 원릉의 부장품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유서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이욱, 2017『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 애통·존숭·기억의 의례화』, 민속원, 193-197면.

13) 『英祖國葬都監二房儀軌』 服玩秩 "服玩函一 用松板 外黑眞漆 內塗紅綃 長二尺一寸 廣一尺六寸二分 高七寸八分 用禮器尺 內外袱尙方造作進排 所盛則冕服諸具及梳函 鏡匣 御押刻樻一 宣傳標信三十一 問安牌七 開門標信五 閉門標信五 摘奸牌十 兵曹摘奸牌一 都總府奸牌二 大將牌二 命招十 密符四十五 加造密符九 御製十七卷 小學五卷 ○依補編 御押刻樻以下 至御製十七卷 竝同入於服玩函中 而都廳徐有防入侍時 親承下敎 又添入小學五卷"

14) 『英祖國葬都監都廳儀軌』 啓辭秩 同日 "今四月十六日 諸承旨入侍 國葬都監堂上追後入侍

영조는 복완궤를 표신과 유의, 유서 등을 함께 넣을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각각의 궤를 제작하지 않도록 수교하였다.[15]

보통 부장품은 같은 종류나 재료로 만든 것끼리 모아 하나의 함궤에 넣은 후 퇴광에 배치한 석함 안에 해당 함궤를 넣는다. 따라서 석함을 담당한 산릉도감의 大浮石所에서는 국장도감의 이방과 삼방에 부장품 함궤의 종류와 크기를 문의하여 제작하였다. 즉 부장품을 어떤 함궤에 넣었는지에 대한 최종 사실은 『산릉도감의궤』에 수록된 석함을 통해 확인된다.

정조의 하교대로 거행했다면 복완함 내에 어제와 소학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표 2〉의 ①에서 보듯이 대부석소에서 제작한 석함에는 복완함과 별도로 어제함 2部와 유서함이 있다.[16] 즉 앞의 논의와는 다르게 어제와 소학을 별도의 함에 넣었기 때문에 석함도 3부를 제작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遺書函'이라고 지칭한 함에 소학을 넣었으니 소학이 '遺書'라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어제는 유서함이 아닌 어제함에 담아 봉안한 서책이라는 것이다.

『국조상례보편』에서 유서와 관련된 내용은 '發引儀'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발인 행차에 필요한 標信과 遺書·遺衣는 발인 시기에 맞추어 대내에서 내주며 유서와 유의는 함에 담아 내준다.[17] 발인 때에 내주는 遺書는 왕릉에 봉안하는 서책으로 보통 '退壙奉安遺書'로 지칭한다.

선왕의 御押이 새겨진 어압각과 표신은 전체 숫자를 二房에 알려주면, 이방에서 담을 궤를 제작하여 발인 5일 전에 대내에 들이면 발인할 때에 모두 담아서 내준다.[18] 유의는 선왕이 평소 입던 웃옷으로 招魂할 때 사용한 것을 함에 담아

時 兵曹判書李徽之所啓 補編第五卷受敎 有曰服玩櫝長廣有裕 遺衣等物自可容入 此後 此櫝先爲製入 則當一體盛下 遺書等櫝 勿爲稟造事 定式施行 載於補編矣 今番則遺衣遺書 同盛於服玩櫝乎 敢稟 上曰依爲之"

15) 『國朝喪禮補編』 卷5, 受敎分類 下, 發引.

16)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奎13586) 下 「大浮石所儀軌」 '稟目秩' 石函尺量.

17) 『국조상례보편』은 각 조목에 따른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諸具'라는 항목에 수록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國朝喪禮補編』 卷2, 發引儀 諸具 "標信 遺書 遺衣 以上三件 臨時內出 ○ 函二 所以盛遺書遺衣者"

18) 『英祖國葬都監都廳儀軌』 啓辭秩 丙申三月十五日 "都監郎廳以摠護使意啓曰 常時冊寶數既已內下 而大行大王御押標信 凡行用各項標信 當於下玄宮時 與服玩明器 一體奉安於退

내주게 된다.[19] 대내에서 유의와 함께 내주는 유서는 선왕이 평소 가까이 두고 보았던 책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발인 반차에서 유서와 복완을 한 궤에 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20]

대내에서 함에 담아 내주는 유의는 선왕의 용포로 梓宮을 현궁에 내린 다음 재궁 위에 덮는다. 유의를 담았던 遺衣函은 '列朝에서 전해오는 물건이므로 반우일에 내입하라'는 정조의 전교대로 낭청이 승정원에 배진하여 내입하였다.[21] 따라서 대부석소의 석함 목록에 수록된 유의함은 퇴광에 배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왕릉 봉안 서책의 추이

영조의 왕릉에 어제와 소학을 부장한 것과 같이 원릉 이전의 왕릉에도 서책을 봉안하였을까. 『국조상례보편』의 편찬 이전인 1474년에 편찬한 『國朝五禮儀』와 『國朝五禮儀序例』의 '흉례'조에는 부장품으로서 유서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의문은 먼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국장도감의궤』와 『산릉도감의궤』·『천릉도감의궤』를 통해 풀어가고자 한다.

조선 후기의 17~18세기에 거행된 선조부터 영조까지의 국장에서 왕릉에 서책을 봉안한 경우에는 '書册櫝'라는 용어로 그 존재가 확인되며 이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숙종의 왕릉인 명릉에만 서책궤가 없고 6기의 왕

壙 而先知其數然後 所盛器具 自都監可以措備 敢啓 傳曰知道"

19) 유의는 승하한 국왕의 혼이 다시 돌아오라고 내시가 지붕에서 '上位復'을 외칠 때 사용한 復衣이다. 유의와 유의함은 평소에 사용하던 것으로 모두 대내에서 준비한다. 『국조상례보편』 권1, 復.

20) 『國朝喪禮補編』 卷2, 發引儀 諸具 "匱五 竝黑眞漆 內塗紅綃 一內漆濃淡 盛笥瓦器 一盛木器標信 一盛服玩遺書 一盛磁器 一盛樂器"

21) 『英祖國葬都監二房儀軌』 "遺衣函一 卽龍袍 發靷時 自內盛於函內出 故奉安於遺衣稱架子到山陵 下玄宮時 先安梓宮上 次覆柩衣 一依傳敎擧行 所盛函 卽列朝相傳之物 事畢後 內入事 有傳敎 故返虞日 郎廳一員 陪進政院 卽爲內入"

릉에는 모두 서책궤가 존재하였다. 그중 경종의 의릉에서는 '御書橫'로 표기하였고, 영조의 원릉은 御製函과 遺書函으로 기록되었다.

〈표 3〉 조선 후기의 의궤에 수록된 왕릉 봉안 書册橫

순번	국왕	능호	승하 연월일	국장도감의궤	산릉/천릉도감의궤	봉안 서책 여부
1	선조	穆陵	1608.2.1	규14861-1, 2	규13515/규15070	書册橫 一
2	인조	長陵	1649.5.8	규13521	규15074/규14597	書册橫 一
3	효종	寧陵	1659.5.4	규13527-1, 2	규15075/규13532	書册橫 一
4	현종	崇陵	1674.8.18	규13539	외규39[22]	書册橫 二
5	숙종	明陵	1720.6.8	규13548-1, 2	외규105	無
6	경종	懿陵	1724.8.25	규13566	외규116	御書橫 一
7	영조	元陵	1776.3.5	규13581	규13586	御製函二/遺書函

조선 후기 국왕의 왕릉에 서책을 봉안한 것은 前例에 따라 거행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숙종의 왕릉에는 왜 서책을 봉안하지 않았을까. 이 사실은 1698년 11월 24일에 숙종이 신하들을 인견하여 당시 사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다. 이시기는 몇 년째 대기근이 계속되었으며, 이해 4월에는 청나라에서 쌀 3만 석을 들여오기도 했다.[23] 여기에 전염병까지 유행하였는데 11월 22일에는 慶德宮의 承暉殿 주방에서 불이 나 주방의 궁인 두 명이 불에 타 죽었다.[24]

영의정 柳尙運과 우의정 李世白은 당시 상황을 修省하는 방법으로 務實과 崇德, 節儉에 그 요체가 있다고 아뢰었다. 숙종은 조정은 국가의 근본이므로 신하들은 한마음으로 논의를 모으고 화평에 힘쓰라고 명하였다. 이어 숙종은 왕릉의 석물과 퇴광에 넣는 부장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22)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지 않은 의궤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규장각의궤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의궤번호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여한 유물 번호이다.

23) 『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 4월 26일 경오.

24) 『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 11월 22일 계사; 23일 갑오.

"능 위의 石物을 厚陵의 사례와 같이 하는 것이 내가 평소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과 이후에도 모두 이 규정에 따르라고 하교하였다. 서책과 의복을 退壙에 넣는 것은 비록 전례이기는 하지만, 古事로 말한다면 漢文帝의 灞陵만이 홀로 발굴의 화를 면하였으며, 임진란 때에 宣陵과 靖陵은 망극한 변을 당하였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퇴광에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25]

왕릉 위의 석물과 퇴광의 부장품에 대한 숙종의 하교는 節儉에 해당한다. 厚陵은 봉분 앞의 上階에 石羊과 石虎를 번갈아 배치했고, 中階에는 文石人 2쌍과 石馬 2쌍, 下階에는 武石人 2쌍과 석마 2쌍의 석물을 세웠다.[26] 후릉의 석물은 다른 왕릉에 비해 규모가 작게 제작된 것이 특징이었다.

석물에 대한 숙종의 하교는 한 달 전 10월 29일에 魯山君의 복위에 따른 의례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린 것이다. 예조판서 崔奎瑞가 각 능의 석물 규모가 동일하지 않으니 古例를 따르기를 청하였다. 숙종은 후릉의 석물이 가장 간단하고 크기가 작으니 이에 따라 거행하며 이후에도 定式으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27]

숙종은 1593년에 왜적이 선릉과 정릉을 파헤쳐 재앙이 梓宮에까지 미친 사실을 언급하면서 퇴광에 서책과 의복을 넣지 말라고 하교하였다.[28] 유상운이 이와 같은 숙종의 하교가 深遠하니 일기에 기록하기를 아뢰었고 숙종은 허락하였다.[29] 이후 1701년에 仁顯王后의 국장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숙종은 석물의

---

25) 『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 11월 24일 을미 "上又曰 陵上石物 倣厚陵例者 是予平日之心 故旣以今番及日後 皆從此規之意下敎 而書冊衣服納於退壙 雖是前例 以古事言之 漢文帝灞陵 獨免掘發之禍 壬辰之亂 宣靖陵遭罔極之變 自今以後勿納壙中 可也"

26) 후릉은 현재 북한의 경기도 개풍군 흥교면 흥교리 백마산 동쪽에 소재한다. 定宗과 定安王后가 안장된 후릉은 同原雙陵으로, 1412년에 정안왕후의 왕릉이 먼저 조성되었다. 이후 1419년(세종 1) 9월에 정종이 승하함에 따라 1420년에 능역이 완성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가보고 싶은 왕릉과 그 기록: 풀어쓴 후릉수개도감의궤』, 36-49면.

27) 『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 10월 29일 경오 "禮曹判書崔奎瑞 又陳各陵象設繁簡不同之狀 請遵用故例 上以厚陵石物 最簡且小 令依此例爲之 此後仍著爲定式"

28) 『선조실록』 권37, 선조 26년 4월 13일 정유. 선릉은 성종의 왕릉이고, 정릉은 중종의 왕릉이다.

29) 1747년에 改修된 해당 일자의 『승정원일기』에는 이 사실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실록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숙종실록』 권32, 숙종 24년 11월 24일 을미 "尙運曰 聖敎深遠 固宜書諸日記矣 上可之"

규모는 후릉과 같이 하고, 퇴광의 규모는 줄여 遺衣服 이외에 의대와 서책 등을 모두 넣지 말라고 전교하였다.[30] 이때의 전교는 '辛巳年 傳敎'로 지칭하며, 이후 왕릉의 석물과 부장품에 대한 규정으로 영향을 끼쳤다.

1720년 숙종이 승하한 후 국장도감의 총호사를 맡은 우의정 李健命은 경종에게 신사년 전교에 따라 명릉을 조성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 "明陵의 오른쪽 비어 둔 곳에 묻어 두었던 石刻은 이미 草單으로 써서 들였습니다. 灰隔의 尺數는 석각에 쓴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退壙은 척수를 줄이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퇴광의 규모가 협소할 듯합니다. 예전부터 퇴광에 넣는 明器는 매우 많아, 이번에 퇴광이 넓지 않으면 앞으로 변통해야 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 석각에는 遺衣服 외에 서책과 의대를 넣지 말라는 하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해년과 갑인년의 國喪에서는 비록 의대와 서책을 모두 퇴광에 넣었습니다만, 신사년 전교에 따라 의대와 서책을 모두 넣지 않아야 합니다."[31]

기해년은 1659년으로 효종이 5월 4일에 승하하여 寧陵을 조성하였던 해이다. 갑인년은 1674년으로 현종이 8월 18일에 승하하여 崇陵을 조성하였던 해이다. 이건명의 언급을 통해 효종과 현종의 왕릉에는 의대와 서책을 봉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숙종의 왕릉에는 신사년의 전교에 따라 서책을 봉안하지 않은 것이다.

경종의 왕릉인 의릉에 봉안한 서책은 '御書櫝'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1724년 병조판서 趙泰億은 숙종의 왕릉에는 서책을 묻지 않았는데, 경종의 왕릉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영조에게 여쭈었다. 영조는 경종의 유의와 서책은 묻을 만한 것이 없다고 답하였고 이에 따라 국장도감에서는 서책궤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32]

---

30) 『승정원일기』 숙종 27년 10월 15일 무진 "石物體制大小 皆用厚陵尺數 退壙左右 各減五寸 長減二尺 例納及遺衣服外 如內出衣襨書冊等物, 皆勿入事, 竝傳敎"

31) 『경종실록』 권1, 경종 즉위년 6월 26일 신유 "明陵虛右處 埋置石刻 旣以草單書入 灰隔尺數 當依刻書爲之 且有退壙減尺之敎 退壙制度 似爲狹少 自前退壙所藏明器甚多 而今此退壙不廣 則勢將變通 且石刻亦載遺衣服外 書冊衣襨勿入之敎 己亥甲寅國恤 衣襨書冊 雖竝入於退壙 而當依辛巳傳敎 衣襨書冊 竝爲勿入矣"

32)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30일 경오 "泰億曰 庚子年則因治命 書冊不爲埋安矣 今則

그렇다면 의릉의 어서궤는 경종의 서책이 아닌 누구의 책을 담은 것인가. 경종의 繼妃이자 경종 승하 후에 大妃가 된 宣懿王后(1705~1730년)는 경종이 평소 소중히 간직하여 보물처럼 완상하였던 숙종의 어필을 내려주어 퇴광에 봉안하기를 원하였다.[33] 따라서 경종의 서책이 아닌 숙종의 어필을 담았기에 어서궤로 표기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18세기 국왕의 왕릉에서 서책을 봉안하지 않은 사례는 숙종이 유일하다. 즉 명릉은 숙종의 신사년 전교에 따라 서책을 봉안하지 않은 특별한 예에 해당한다. 또한 정조가 원릉에 서책을 봉안한 것은 신사년 전교를 따르지 않고, 숙종 이전의 전례대로 거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확인된 목릉과 장릉·영릉·숭릉의 서책궤에는 무슨 책을 넣었을까. 선조와 인조·현종의 『국장도감의궤』에는 서책궤를 제작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궤의 수량과 크기, 재료에 대해 수록하고 있으나 봉안한 책에 대한 정보는 없다.

반면 효종의 영릉은 처음 조성한 지 14년만인 1673년에 천릉하였는데, 이때의 의궤인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奎13532)에서 부장한 서책의 목록을 찾을 수 있다. 당시 9월 30일에 총호사 우의정 김수흥 등은 연명하여 올린 장계에서 퇴광에 배치하였던 부장품의 상태를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따르면 영릉에 부장한 서책은 [心經二卷 + 龍飛御天歌四卷 + 書傳大文二卷 + 史漢一統十卷 + 詩傳大文一卷]으로 모두 5종 19책이었다.[34] 정조가 원릉에 소학을 봉안한 것은 영릉에 심경을 순장하였던 고사를 본받은 것이었다.

그동안 학계에는 정조의 '영종대왕행록'에 근거하여 영릉에 『심경』을 순장한

何以爲之乎 上曰 不但先朝事如是 今則無遺衣書册 可以埋安者矣 一鏡曰 遺衣書册所藏櫃子 例自都監備待矣 下敎如此 今番則勿爲備待之意 敢達 上曰唯"

33)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 9월 16일 병진 "上曰 大臣進來 今番奉下梓宮時 大妃殿罔極中有御筆欲納 而未及盡納者 故欲爲奉安於槨子 納諸退壙中 而以此問于大臣爲敎矣 光佐曰 肅宗大王御筆乎 上曰然矣 光佐曰 大行大王 平日珍藏而寶玩之 納諸退壙中 似好矣"

34)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 '癸丑九月三十日 摠護使右議政臣金壽興 提調戶曹判書臣閔維重 兵曹判書臣金萬基 戶曹參判臣金徽 聯名狀啓', "書册槧 心經二卷 龍飛御天歌四卷 書傳大文二卷 史漢一統十卷 詩傳大文一卷 以上書册 盡爲腐破 堇存形體 故編帙不得明白區別 只從所見作卷埋安次"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35] 그러나 실제 영릉에는 심경 이외에 『용비어천가』와 『서전대문』·『사한일통』·『시전대문』도 함께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릉에 어제를 봉안했던 것과는 달리 영릉에는 효종의 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효종의 어제가 편찬되어 『열성어제』로 간행된 것은 1691년이기 때문에 왕릉에 부장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선조는 1631년, 인조와 현종은 1679년의 『열성어제』에 처음으로 수록되었다.[36] 따라서 영릉의 사례와 같이 목릉과 장릉·숭릉도 국왕이 평소 가까이 두고 열람하였던 유서를 봉안하였을 것이다.

4. 발인 반차와 어제 채여

왕릉에 봉안할 부장품은 재궁을 대여에 안치하여 산릉으로 출발하는 發靷 전에 완비된다. 부장품은 재궁과 함께 발인 행차를 따라 왕릉으로 향하게 된다. 국장의 발인 행차를 그린 「發靷班次圖」는 『국장도감의궤』의 [一房儀軌]와 [二房儀軌] 사이에 수록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영조국장도감의궤』의 「발인반차도」를 통해 원릉의 부장품이 산릉까지 어떻게 운반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발인 행차는 여타의 행차와는 다르게 삶과 죽음, 吉과 凶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특징을 지닌다. 발인 행차의 주체인 국왕은 이미 승하했지만 행차의 의장은 재위했을 때의 大駕儀仗의 규모를 갖추었다.[37] 즉 발인 행차는 국왕의 거둥을 드러냄과 동시에 승하를 상징하는 행렬이어야 했다. 따라서 발인 행차에서 길의 장은 국왕의 존재를 표상하며, 흉의장은 승하를 표상하며 공존하였다.[38]

---

35) 『弘齋全書』 卷17, 「行錄」 '英宗大王行錄 丙申', "王常誦小學 如己言 至春秋篤老之時 或講讀不已 小子以小學藏之元陵壙中 敢效寧陵壙中 殉心經故事也"

36) 1631년과 1679년에 간행된 『열성어제』의 수록 내역에 대해서는 안장리, 2016 『장서각 소장 『열성어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참조.

37) 왕의 행렬은 행차의 목적에 따라 大駕鹵簿, 法駕鹵簿, 小駕鹵簿로 구분되었다. 대가노부는 조서를 가지고 조선에 온 중국 칙사를 맞이할 때나 종묘·사직에 거둥할 때에 사용하는 가장 큰 노부이다. 노부는 가장 큰 의례에 사용하므로 가장 많은 165개의 의장을 사용하며 참여 인원의 규모도 가장 컸다. 김지영, 2017 『길 위의 조정: 조선시대 국왕 행차와 정치적 문화』, 민속원, 166면.

국장도감의 일방에서는 발인 행차에 필요한 대여를 비롯하여 각양의 요여와 채여 등 운반 기구를 마련하였고,[39] 이방에서는 발인 행차에 필요한 吉儀仗과 凶儀仗을 비롯하여 부장품 등을 담당하였다. 일방에서는 이방과 삼방에서 만드는 명기와 복완, 애책 등의 수효에 맞추어 채여를 제작해야 하므로 수효를 써 보내도록 요청하였다.[40] 이렇게 마련된 물품들이 동원된 영조 국장의 발인 반차의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조 국장 발인 반차의 구성〉
A [導駕 + 前射隊·左廂軍] + B [大駕儀仗 + 平轎子 + 小輦] + C [前部鼓吹[41] + 冊寶腰輦 6部 + 謚冊寶腰輦 + 魂帛腰輦 + 香亭子 + 神輦 + 後部鼓吹] + D [副葬品彩輿·架子 9部 + 肩輦 + 御製彩輿 + 羽葆 + 香亭子 + 銘旌 + 大輦] + E [哭宮人 + 守陵官·侍陵官 + 都監堂郎 +東班·西班 + 後射隊·右廂軍]

B부분 길의장에서부터 C부분 신연 뒤의 후부고취까지의 행렬은 국왕의 대가노부 행차와 동일하다. 여기의 중심은 대행왕의 혼령을 상징하는 혼백을 실은 神輦이다. 신연은 국왕이 생존했을 때 행렬의 위치에 자리하였다. 신연 앞에는 영조가 생전에 받은 책보와 교명을 실은 요여 6부가 있다.[42] 이 책보요여는 국왕의 공덕을 찬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책보를 받들고 가는 차비관과 충찬위의 복장은 모두 吉服이다.[43] 이 부분은 산릉에서 梓宮을 玄宮에 내린 뒤에 虞主를 받들고 궁궐로 돌아오는 것을 返虞에서도 동일하다.

D부분은 흉의장을 비롯한 국장을 상징하는 의물들의 대열이다. 이 대열에서

38) 이욱, 앞의 책, 152면.

39) 일방에서 담당한 운반 기구는 '大輦諸具 肩輦諸具 外梓宮輦輿諸具 神輦 神輦 副輦 平轎子 靈座諸具 各樣腰輦彩輦 香亭子 輪輦 車子'이다.

40) 『영조국장도감일방의궤』 稟目秩 丙申三月初十日 "一 本房所掌腰彩輦段 一從二三房明器樂器册寶數 造作是如乎 數爻一一書送事 該房良中 捧甘何如 堂上手決內依"

41) 발인반차도에 전부고취는 '陳而不作'이라고 기록하였다. 즉 대열만 이루고 실제 음악은 연주하지 않는 것이다.

42) 冊寶腰輦 6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①辛丑年敎命竹册玉印腰輦(1721년) - ②庚申年册寶腰輦(1740년) - ③壬申年册寶腰輦(1752년) - ④丙子年册寶腰輦(1756년) - ⑤壬辰年册寶腰輦(1772년) - ⑥丙申年册寶腰輦(1776년)】

43) 이욱, 앞의 책, 154면.

원릉의 퇴광에 넣을 부장품을 싣고 가는 채여 7부와 가자 2부가 반차의 중앙에 있다. 부장품의 행렬 좌우에는 後殿大旗를 시작으로 牽曳人 두 사람이 줄을 끌고 가는 方相氏와 輓章, 竹散馬, 竹鞍馬 등의 흉의장이 등장한다. 이 부분은 국장이라는 흉례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렬로, 소궤채여 앞의 소궤 排案床을 들고 가는 擧案者부터 擔持軍, 差備官 모두 상복 차림이다.

채여마다 20명의 채여꾼이 배정되었는데 반차도를 보면 10명이 한 채여를 메고 있다. 따라서 산릉까지 10명씩 채여를 매고 가다가 교대하면서 부장품을 운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채여의 앞에는 排案床을 든 거안자가 인도하고 뒤에는 네 명의 差備官이 말을 타고 따른다. 영조 국장의 발인 반차에서 부장품의 채여와 가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 채여에 추가로 실은 물품은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영조 국장 발인 반차(1776년) 구성 : 副葬品彩輿・架子 9部〉
【①笥橫彩輦 - ②沙器橫(+翣扇)彩輦 - ③樂器橫彩輦 - ④籩豆橫(+柩衣函)彩輦 - ⑤几杖架子 - ⑥遺衣稱架子 - ⑦服玩函・標信橫彩輦 - ⑧贈玉贈帛彩輦(+銘旌函) - ⑨哀册彩輦】

D의 대열은 [副葬品彩輿・架子 9部 + 肩輦 + 御製彩輿 + 羽葆 + 香亭子 + 銘旌 + 大輦]의 순서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왕릉 봉안 서책인 영조의 어제와 『소학』은 다른 부장품 채여와 분리되어 우보 앞에 배치된 '御製彩輦'에 실려 있다. 발인 반차에서 이와 같은 배치는 4월 12일에 정조가 퇴광에 봉안할 『列聖御製』 궤를 채여에 실어 羽葆 앞에 두라고 분부하여 정한 것이다.[44] 〈그림 1〉은 영조 국장의 「발인반차도」에서 견여에서부터 대여까지의 모습이다.[45]

44) 『英祖國葬都監都廳儀軌』 丙申四月十二日 "校正郎廳入侍時 傳曰 列聖御製 退壙奉安件一件 粧以藍緞衣 裹以紅緞袱 盛橫子 朱漆畵龍 隨畢役 奉安殯殿 因山時 羽葆前盛於彩輿奉安事 分付都監"

45) 영조 국장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발인반차도」에 그려진 '어제채여'를 주목하고 그 배경을 고찰한 바 있다. 이욱, 앞의 책, 155면. 〈그림 1〉은 156-157면의 「발인반차도」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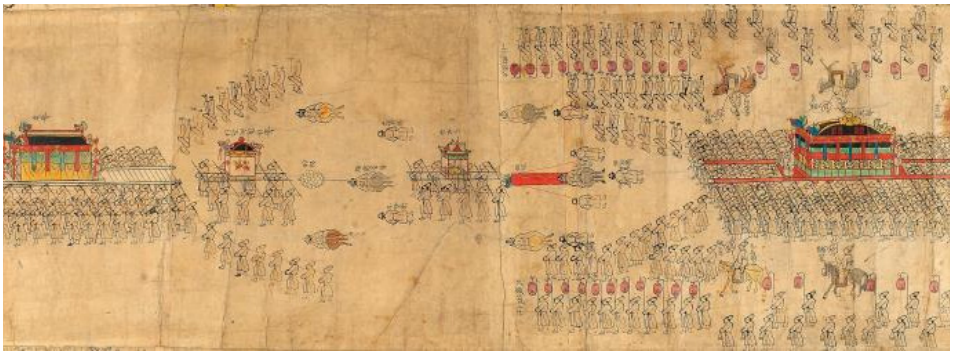

〈그림 1〉 영조 국장의 「발인반차도」, '列聖御製彩轚'(옥스퍼드대학 보들리 도서관 소장)

우보는 흰 거위 깃털로 층층이 꿰매어 일산처럼 만들어 대나무 장대에 단 것으로 繕工監 副奉事 金漢訥이 받들고 갔다.[46] 우보의 역할은 대여의 앞에서 대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을 지휘하기 위한 깃대이다.[47] 정조가 다른 부장품과 구별하여 어제채여를 우보 앞에 배치한 것은 발인 행렬에서 대여와 함께 주목받을 수 있도록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조 국장의 발인 반차에서 이와 같은 봉안 서책의 배치를 효종 국장의 발인 반차와 대비해보자. 효종 국장의 「발인반차도」에서는 명기에 속하는 부장품을 실은 채여 5부를 '明器彩轚 五'로 통칭하여 각 채여의 내역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국장도감이방의궤』에서 채여에 추가로 실은 궤를 밝히고 있어 각 채여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48]

---

46) 『英祖國葬都監二房儀軌』 凶儀仗秩 "羽葆一 在肩輿之後 以白鵝羽造作 制形如蠶 竹柄粉漆長八尺 注之楸木磨造 繕工監官擎執 下玄宮後燒火"

47) 『禮記』 「喪大記」에서 '관을 움직이는 자는 우보를 들고 인도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욱, 앞의 책, 166면.

48) 『孝宗國葬都監二房儀軌』 稟目秩 六月十五日 "故取考謄錄中 服玩腰輿段 平天冠添載 樂器彩輿段 書册槓添載 木器槓彩輿段 標信槓內入御押槓添載 而其餘笭槓沙器槓木奴婢槓等 所載三彩輿段 無添載之物 今此尙衣院造來 前排冕服函 赤舄函 遠遊冠家等 分載於笭槓 沙器槓 木奴婢槓等 所載三彩輿爲乎喩 別造腰輿事 分付一房爲乎喩 指一分付何如 總護使 手決內 前排冕服入盛函段 沙器槓同載 赤舄入盛函段 木奴婢槓同載 遠遊冠家段 笭槓同載"

〈효종 국장 발인 반차(1659년) 구성 : 副葬品彩輿・架子・腰輦 9部〉
【①竹冊彩輦 - ②樂器橫彩輦(+書冊橫) - ③木器橫彩輿(+標信橫+御押橫) - ④笥橫彩輦(+遠遊冠家) - ⑤沙器橫彩輦(+冕服函) - ⑥木奴婢橫彩輿(+赤舄) - ⑦遺衣稱架子 - ⑧服玩彩輿(+平天冠) - ⑨哀冊腰輦】

효종의 영릉에 봉안할 서책궤는 ②악기채여에 추가로 실어 악기궤와 함께 운반되었다. 인조 국장의 「발인반차도」 역시 영릉의 부장품과 동일한 구성의 그림이며, 발인할 때에 서책궤를 내주어 악기채여에 실어 운반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해 인조와 효종의 왕릉에 봉안한 서책은 『열성어제』가 아닌 유서이며, 다른 부장품과 동일한 대열에 서책궤가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릉의 부장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전의 발인반차에 존재했던 木奴婢 채여가 없다는 것이다. 1752년 영조는 앞으로 목노비 채여를 없애 국장에서 더 이상 쓰지 않도록 수교하였다.[49] 효종 국장의 발인반차에 보이는 ⑥木奴婢橫彩輿는 1720년 숙종의 국장에서도 ③木奴婢橫彩輿로 존재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숙종의 명릉에는 서책을 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책궤는 존재하지 않으며 발인 반차에서도 그 모습은 없다.

〈숙종 국장 발인 반차(1720년) 구성 : 副葬品彩輿・架子 9部〉
【①笥橫彩輦 - ②沙器橫彩輦 - ③木奴婢橫彩輿 - ④樂器橫彩輦 - ⑤木器橫彩輿 - ⑥遺衣稱架子 - ⑦服玩彩輿 - ⑧贈玉贈帛彩輦 - ⑨哀冊彩輦】

발인반차의 끝부분인 E는 대여를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여 뒤로 哭宮人 20명이 두 줄로 서고 사방에 行帷帳을 둘러 가렸다. 그 뒤로 수릉관과 시릉관이 서고, 도감의 총호사를 시작으로 당상과 낭청, 동반, 서반이 뒤따른다. 반차의 마지막에는 행렬의 호위군사 A와 짝을 이루는 後射隊・右廂軍가 배치되었다.

49) 발인반차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영조의 절용과 애휼의 정신이 송명거와 망촉의 생략, 가마의 감소, 목노비 제거 등에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안희재, 2010 「조선후기 發靷班次의 변화와 의미」 『한국학논총』 34, 849-850면.

5. 원릉 봉안 서책의 특징

조선시대에 특정한 곳에 서책을 봉안한 대표적인 사례는 사고의 실록각과 선원각을 들 수 있다. 이곳에 서책을 봉안하는 목적은 영구히 보존하여 후손에게 남기려는 것이다. 1776년에 규장각 설립 이후에는 왕실 구성원과 관계되는 기록물을 봉모당과 외규장각에 봉안하였으며 그에 따른 의례도 갖추어갔다.

『선원계보기략』이나 『국조보감』과 같은 왕실서책의 제작과 봉안에 대해서는 관련 의궤와 형지안 등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왕릉에 봉안한 유서는 국장도감이나 산릉도감의 의궤에서 그 존재는 확인되지만, 제작 과정이나 卷帙에 대한 정보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두 도감의 주요 업무는 국왕이 승하한 후 5개월 내에 산릉을 조성하고 재궁과 발인 의장 등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이 왕릉 봉안 서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조선후기의 17~18세기에 조성된 7기의 왕릉 중에서 정조가 주관한 원릉 봉안 서책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다. 본 장에서는 원릉에 봉안한 서책의 내력과 장황을 통하여 원릉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생전의 글과 글씨, 御製와 御筆

1776년 3월 5일에 영조가 승하하자 다음 날에 정조는 영조어제의 편찬과 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下令하였다.

> "先朝의 御製는 내려준 것이 매우 많다. 비록 짧은 글일지라도 편찬하여 간행해야 하는데, 因山 전에 간행하기 어렵다면 한 本을 베껴 내고 舊本은 퇴광에 넣으려 한다. 이 뜻을 院相과 상의하여 아뢰라. 만약 간행한다면 編輯廳을 설치해야 하며, 肅廟 어제도 간행한 전례가 있으니 전례를 상세히 참고하여 아뢰어라."[50]

50) 『영조실록』 영조 52년 3월 6일 정축 "令曰 先朝御製之下者 甚多 雖片言隻字 不可不編次開刊 而若於因山前 難以開刊 則以一本謄出 舊本欲納于退壙 此意與院相相議以奏 若開刊則當設編輯廳 而肅廟亦有御製開刊之例 亦詳考前例以奏"

因山은 국왕의 시신을 왕릉으로 옮기는 발인을 가리키는데, 영조 국장의 발인일은 7월 26일이다. 발인 후 국왕의 관을 壙中인 玄宮에 내리는 것을 '下玄宮'이라고 하는데 하현궁 일자는 보통 발인 다음 날이다. 따라서 7월 26일 이전에 영조의 어제가 간행되어야 퇴광에 봉안할 수 있게 된다. 정조는 어제가 간행되지 못하면 한 본을 필사하여 남기고 원본을 원릉에 넣고자 하였다.

3월 11일에 영조 어제의 간행은 이전에 책판으로 간행된 『列聖御製』와 함께 활자로 인출하는 것이 논의되었다.[51] 간행 일정은 빠르게 진행되어 7월 6일에 『열성어제』를 관원들에게 반사하고,[52] 7월 11일에는 인출을 감독한 이들에게 상을 내렸다.[53] 이처럼 신속하게 간행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영조의 재위 기간에 御製編次人 趙明鼎과 具允明·蔡濟恭이 『열성어제』에 수록할 어제를 편찬해 두었기 때문이다.

『열성어제』는 1691년에 태조의 시문부터 현종의 시까지 8권이 간행된 후, 그 뒤를 이어 1720년에 숙종의 시문 8권을 간행되었고, 1726년에는 경종 시문 1권과 목록을 간행하였다. 보통 『열성어제』는 이전에 간행된 본에 승하한 선왕의 어제를 합하여 인출하는데 이것을 添刊이라고 하며, 앞의 것에 합하여 붙인다는 의미로 合附라고 칭한다.[54] 즉 1726년까지 『열성어제』는 승하한 선왕의 어제를 추가로 판각하여 열성의 어제와 합부하여 간행하였다.

1776년에 영조 어제를 추가하여 활자로 찍어낸 『열성어제』 합부본의 冊次(volume)과 卷次(chapter)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55] 1776년에 간행한 『열성어제』는 [목록3, 2책 + 어제 37권19책 + 별편 2권2책]으로 구성된 23책이다.

51) 『승정원일기』 영조 52년 3월 11일 임오.
52)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7월 6일 을해.
53)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7월 11일 경진.
54) 조계영, 2009 「조선후기 『열성어제』의 편간과 보존」 『書誌學硏究』 44, 452면.
55) 1776년에 『열성어제』를 현종실록자로 인출하게 된 계기는 영조의 「御製用活字綸音」에 따른 것이다.

〈표 4〉 1776년 간행한 『열성어제』(奎1803)의 卷帙 구성과 간행 년도

册次	卷次	수록 시문	간행 년도
1	列聖御製目錄凡例	5條(1726년)+5條(1776년)	·
	目錄一(권1-권12)	태조 시·문~숙종 시	1726년 간행
	目錄二(권13-권17)	숙종 문~경종 시·문	
2	目錄三(권18-권37)	영조 시·문	1776년 간행
3	권1	태조 시·문	1691년 간행
		정종 시	
		태종 시·문	
	권2	세종 시·문	
		문종 시·문	
		단종 시(1720년 첨입)	
4	권3	세조 시	
	권4	세조 문/ 예종 문	
5	권5	성종 시	
	권6	성종 문/ 중종 시·문	
6	권7	인종 시·문/ 명종 문/ 선조 시문	
	권8	인조 문/ 효종 시문/ 현종 시	
7	권9/ 권10	숙종 시	1720년 간인
8	권11/ 권12		
9	권13/ 권14	숙종 문	
10	권15/ 권16		
11	권17	경종 시·문	1726년 간인
12	권18/ 권19	영조 시	1776년 간인
13	권20/ 권21	영조 시	
14	권22/ 권23	영조 문	
15	권24/ 권25	영조 문	
16	권26/ 권27	영조 문	
17	권28/ 권29	영조 문	
18	권30/ 권31	영조 문	
19	권32/ 권33	영조 문	
20	권34/ 권35	영조 문	
21	권36/ 권37	영조 문	
22	列聖御製別編 권2	숙종	1720년(권17) 간인
23	列聖御製別編 권3	영조	1776년 간인

의궤에 의하면 어제 17권은 어제함 2부에 담아 퇴광에 봉안하였다. 정조가 13朝의 『국조보감』을 간행한 후 종묘 각 신실에 해당 보감만을 봉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릉에는 영조의 어제에 해당하는 『열성어제』 12책을 봉안하였을 것이다. 1776년에 간행한 『열성어제』 23책에서 영조의 어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目錄三 1책 + 御製 20권10책 + 별편 1권1책]으로 모두 12책이다. 그렇다면 의궤에서 언급한 17권과 『열성어제』 12책은 5책의 차이가 있다.[56] 이것은 영조 국장의 『산릉도감의궤』의 '御筆' 기록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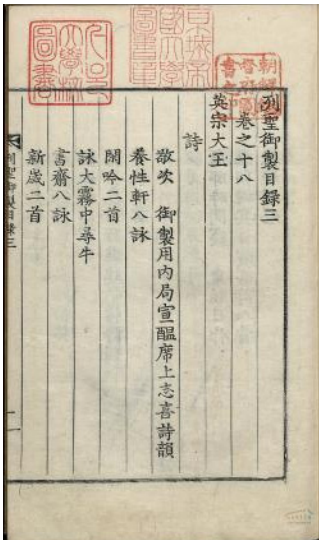
列聖御製目錄三
卷之十八
英宗大王
詩
敬次 御製用內局宣醞席上志喜詩韻
養性軒八詠
閑吟二首
詠大霧中尋牛
書齋八詠
新歲二首

〈그림 2〉 『열성어제』 目錄3

列聖御製卷之十八
英宗大王
詩
敬次 御製用內局宣醞席上志喜詩韻
聖俠乃寒慶始知黔佑天八方先忭洽朝野復安
眠奇妙青囊術惟公學業專大庭獻賀日蹈舞五
雲前
養性軒八詠
倚閭遠望處仁王指視間候忽烟霧衆山意古今

〈그림 3〉 『열성어제』 卷18

산릉도감의 대부석소에서 만든 어제 석함 2부는 길이가 2尺5寸, 너비 2尺4寸, 높이 9寸5分으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산릉도감의궤』에는 어제함의 크기를 기술하고 다음 줄에 '御筆入於御製函'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어제에 어필을 합한 17책을 두 개의 어제함에 넣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열성어제』와 차이나는 5책이 어필의 책수와 일치하는 것인가. 이 책수의 차이를 밝히

56) 조선시대에는 冊(volume)과 卷(chapter)을 혼용하였는데, 요즘과 마찬가지로 '卷'으로 표기한 것이 보통 '冊(volume)'을 의미할 때가 많다.

는데 참고할 만한 문헌 기록을 살펴보자.

『孝明殿日記』(奎13042)의 5월 29일에 영조 어제의 퇴광 봉안건 4秩을 빈전의 동쪽에 봉안했다고 기록되었다.[57] 같은 날의 『승정원일기』에도 校正廳에서 영조의 어제와 어필을 빈전에 봉안하자, 정조는 교정청의 당상과 낭청을 시상하기 위해 書啓하고, 어필을 시임과 원임대신을 비롯하여 奉朝賀 등에게 1책씩 반사하라고 명하였다.[58]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그림 4〉와 〈그림 5〉의 『英廟御筆』(古2410-38)은 1776년 7월 30일에 봉조하 李最中에게 내사한 것이다. 1776년에 간행한 영조의 어필은 돌에 새겨 음각으로 인출한 본과 목판에 새겨 양각으로 인출한 본이 있다. 여러 기관에 소장된 『영묘어필』의 석판본과 목판본은 장황과 수록 내용에 차이를 보이며, 당시의 刻石과 刻板이 국립고궁박물관과 수원박물관에 현전한다.[59]

또한 『정조실록』의 기사에 의하면 교정청에서 흩어져 있어 간행하지 못한 어제를 등사하여 한 본은 대내 별전에 임시로 봉안하고, 한 본은 원릉의 퇴광에 넣었다는 것이다.[60] 이상에서 고찰한 것을 정리하여 어제 17책을 추정해보면 [①『열성어제』 12책 + ②석판본 『영묘어필』 1책 + ③목판본 『영묘어필』 1책 + ④어제 등사본 3책]을 원릉에 봉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57) 『孝明殿日記』 五月二十九日 "○ 大行大王御製文 退壙奉安件四秩 奉安于殯殿東邊 而校正堂上蔡濟恭 郎廳承史 同爲入侍"

58)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5월 29일 "上曰 校正堂郎入殯殿 奉御製可也 校正都監堂上蔡濟恭 都廳趙尙鎭沈豐之朴天衡吳大益 奉御製入殯殿 奉安訖 上曰 校正都監堂郎 旣已入來同參陪祭可也 上行夕上食 儀註上同 上還廬次 命書傳敎曰 先朝御製 旣已內入奉安 校正廳堂郎書啓 又命書傳敎曰 先朝御筆 旣已奉安 頒賜件 時原任大臣奉朝賀 編次人校正堂郎 諸承旨玉堂翰注 各賜一册 宗親文蔭武二品以上 曾經承旨玉堂 逮事先朝人員 令吏兵曹 一竝書入 難以遍頒 依頒曆例 受點者 各賜不粧一件"

59) 이완우, 2013 「조선후기 列聖御筆의 刊行과 廣布」 『藏書閣』 30, 163-168면.

60)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9월 25일 계사 "上卽阼 首命先朝編次人具允明蔡濟恭等開局 編英考御製 鋟于梓 摸英考御墨 刻于石 又以御製之散在中外 未及鋟梓者 設局謄寫 一本奉藏于元陵之便房 一本權安于大內別殿" 이 기사에서 어제 등사본의 책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乾隆四十一年丙申三月三十日
內賜奉朝賀李最中
先朝御筆一件
命陰謝
恩

〈그림 4〉『영묘어필』 내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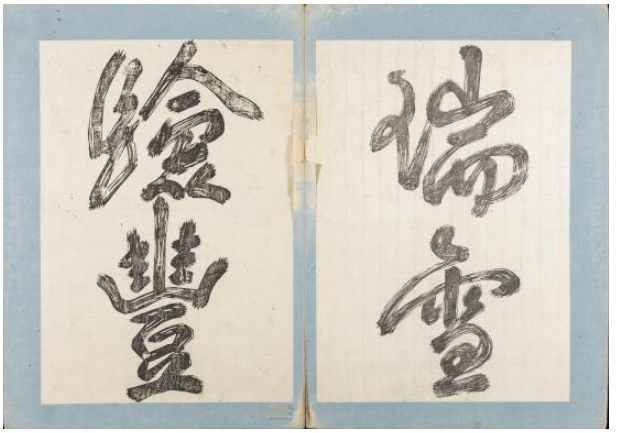
瑞雪驗豊

〈그림 5〉『영묘어필』(古2410-38), 陽刻 木刊, '瑞雪驗豊'

원릉에 봉안한 서책의 장황과 보관 방법은 정조의 명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당시에 왕실서책을 장황하여 보관하는 방법이었다. 4월 12일에 교정낭청이 입시하였을 때 정조는 "『열성어제』 퇴광 봉안 1건을 藍大緞 册衣로 장황하여 紅大緞 보자기에 싸서, 朱漆하고 용을 그린 궤에 담아 殯殿에 봉안하라. 그리고 인산할 때에 우보 앞의 채여에 실어 봉안하도록 도감에 분부하라"고 전교하였다.[61] 이에 따라 국장도감의 이방에서 어제 17권의 크기에 맞춘 紅雲紋緞 보자기 두 개에 나누어 봉과했다.[62] 영조의 어제와 어필 17권은 모두 藍大緞 책의로 장황한 후 홍문대단으로 쌌다. 그리고 이것을 朱漆하고 용 문양으로 장식한 어제함에 넣었다.

왕실서책을 남대단으로 장황한 사례는 1726년에 간행한 『열성어제』와 1746년에 「禁紋事目」을 반포하기 전의 『선원계보기략』 진상건에서 볼 수 있다.[63] 이를

61)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4월 12일 "校正郎廳入侍時 傳曰 列聖御製 退壙奉安件一件 粧以藍緞衣 裹以紅緞袱 盛槓子朱漆畵龍 隨畢役奉安殯殿 因山時 羽葆前 盛於彩輿奉安事 分付都監"

62) 『영종국장도감의궤이방의궤』 稟目秩 "一 服玩函 同入御製十七卷 小學五卷 裹袱紅雲紋緞 從其大小磨鍊 以稟爲去乎 捧甘取用何如 堂上 手決內依 戶曹金契, 御製 裹袱 紅雲紋緞 全廣二尺六寸 二片 紅眞絲三分 金牋紙次 藍眞絲二戔 紙金一張, 小學 裹袱 紅雲紋緞 全廣一尺三寸 一片 紅眞絲二分 金牋紙次 藍眞絲二戔 紙金一張"

63) 조계영, 2006 『朝鮮王室 奉安 書册의 粧績과 保存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

통해 정조가 선왕 영조에게 진상하는 서책의 위격에 맞추어 장황하여 원릉에 봉안한 것은, 생전의 국왕을 모실 때와 같이 예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생전에 보던 책, 『소학제가집주』

영조는 숙종의 명에 의해 13세에 처음으로 사부 곽시징에게서 『소학』을 배웠다. 이후 왕세제에 책봉되면서 서연에서 처음으로 강독한 교재가 『소학』이었다. 영조는 즉위 후 만년까지도 『소학』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치국과 평천하의 근본을 『소학』에서 찾았다.[64] 영조는 만학인 자신의 학업에 대한 열등감을 『소학』을 학습했다는 사실로 만회하고자 하였다.[65]

영조는 1744년 1월에 宣政殿에서 訓義한 6권 5책의 『小學諸家集註』를 편찬하였다. 이 책은 세종 연간에 『자치통감강목』에 훈의를 달아 '思政殿訓義'라고 칭했던 고사를 따라 '宣政殿訓義' 또는 '訓義小學'으로 불렀다. 이는 영조가 계지술사와 법조종을 표방하였던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추진하였던 사업 중 하나였다. 주자학의 주요 학습서였던 『소학』은 영조 연간에 이르러 정치 이념을 구현하는 매개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66]

영조는 『소학』을 자기 말처럼 읊조리어 노년에도 강독하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이에 정조는 효종의 寧陵에 『心經』을 묻었던 고사를 본받아 원릉에 『소학』을 봉안하였다.[67] 영조의 삶에서 『소학』은 아주 특별한 책이었기에 평소 열람하던 유서를 현궁에서도 볼 수 있도록 넣은 것이다.

영조의 어제와 어필은 승하 후에 교정청에서 새로 간행한 것을 진상건으로 장황하여 5월 29일에 빈전에 봉안하였다. 어제함에 담아 빈전에 봉안되었던 어제와 어필은 7월 26일 발인에 어제채여로 운반하여 퇴광에 봉안하였다. 이와는 달

문, 56면; 2009 「조선후기 『열성어제』의 편간과 보존」 『서지학연구』 44, 473면.

64) 권오영, 2012 「영조의 제왕학 학습과 정치이념」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92-293면.

65) 신명호, 2015 『영조의 통치이념과 개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38면.

66) 정호훈, 2014 『조선의 소학』, 소명출판, 271면.

67) 『弘齋全書』 卷17, 行錄 英宗大王行錄 丙申 "王常誦小學 如己言 至春秋篤老之時 或講讀不已 小子以小學藏之元陵壙中 敢效寧陵壙中 殉心經故事也"

리 유서인 『소학』은 遺書函에 담아 발인 일자에 맞추어 대내에서 내주었다.

어제를 남대단으로 장황한 것과는 달리, 정조는 원릉에 봉안할 『소학』을 藁正紙로 개장하도록 명하였다.[68] 고정지로 개장한 뒷면은 白紙로 배접하고, 배접한 백지가 보이지 않도록 붙이는 面紙는 厚白紙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개장한 『소학』은 紅眞絲로 묶고 제목을 적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학』도 책의 크기에 맞춘 紅雲紋緞 보자기 한 개에 쌌다.[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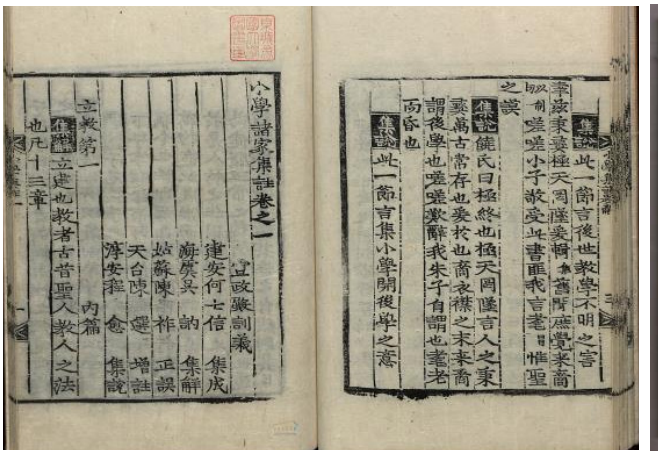

〈그림 6〉 『소학제가집주』(奎11011) 卷1

〈그림 7〉 藍無紋紬 冊衣

〈그림 7〉의 『小學諸家集註』(奎11680)는 일반 서책이지만 왕위 계승자로서 상징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에서 전수된 책으로, 무늬 없는 남색 비단인 紬로 장황하였다.[70] 이 책은 1736년에 영조가 첫돌을 맞은 사도세자에게 내린 것인데, 사

68) 『영조국장도감이방의궤』 稟目秩 "一 因傳敎 服玩函同入 小學五卷改衣 粧緣所入磨鍊 以稟爲去乎 依此捧甘取用 何如, 堂上 手決內依 戶曹 工曹 平市署 長興庫 義盈庫 禮賓寺, 衣次 藁正紙五張 褙接次 白紙十五張 面紙次 厚白紙五張 粧緣次 紅眞絲三戔 膠末五合 黃蜜三戔 家猪毛二兩 寫題目所用 黃筆 眞墨 各一"

69) 위의 책 "一 服玩函 同入御製十七卷 小學五卷 裹袱紅雲紋緞 從其大小磨鍊 以稟爲去乎 捧甘取用何如 堂上 手決內依 戶曹金契, 御製 裹袱 紅雲紋緞 全廣二尺六寸 二片 紅眞絲三分 金牋紙次 藍眞絲二戔 紙金一張, 小學 裹袱 紅雲紋緞 全廣一尺三寸 一片 紅眞絲二分 金牋紙次 藍眞絲二戔 紙金一張"

70) 윤정, 2004 「肅宗~英祖代의 세자 교육과 『小學』」 『규장각』 27, 42-43면.

도세자는 이 책을 1753년에 첫돌을 맞은 정조에게 다시 내려 주었다. 보통 서책은 황염수로 물들인 종이로 책의를 만들기 때문에 '黃衣'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책은 장차 국왕이 될 元子의 지위에 맞게 왕실서책의 睿覽件으로 장황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영조의 유서인 『소학』을 왜 고정지로 개장하였을까. 또 개장하기 전의 『소학』은 〈그림 7〉처럼 비단으로 장황했던 책이었을까. 이 의문은 1720년에 숙종이 승하하였을 때 국휼시의 장황 규정에 따라 진강서책을 개장한 사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1월 3일에 홍문관에서 '전부터 국휼시의 경연 책자는 고정지와 藍絲로 장황하여 들이는 규정이 있었으니' 진강서책인 『서전』을 개장하도록 홍문관에 내려달라고 아뢰었다.[71] 1731년 5월 19일에는 소대에서 시강관 김상성이 진강서책인 예기에 토를 달고 책의를 고정지로 개장하여 들이는 것을 아뢰어 영조가 윤허하였다.[72] 이때는 1730년 6월에 경종의 비인 선의왕후가 승하하여 魂殿이 설치되어 있던 기간이었기에 고정지로 개장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진강서책의 장황에 대한 『홍문관지』의 규정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국휼을 당하면 책의를 고정지로 바꾸고 紅絲의 册絲를 靑絲로 개장하는 것이다.[73] 이와 반대로 1802년 6월에 정조의 禫祭 이후에 고정지로 개장하였던 진강서책을 본래의 黃紙로 다시 개장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상을 마친 후에도 素色의 진강서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과, 고정지는 황색과 백색 사이의 색으로 완전한 소색이 아니니 무관하다는 입장이 맞섰다. 즉 국상 기간의 진강서책은 소색의 책의로 개장하는 것이 상례였으며, 고정지의 책의는 완전한 흰색이 아닌 淡黃色(beige)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74]

고정지 개장과 관련하여 또 다른 규정은 『奎章閣志』의 '粧書' 조목에서 중국서

71)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11월 병인.

72) 위의 책, 영조 7년 5월 신사.

73) 조계영, 2014 「봉안 서책과 외규장각 의궤의 장황」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2) 외규장각의궤의 장황』, 국립중앙박물관, 14면.

74) 위의 책, 15-16면.

책의 책의를 고정지로 개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개장한 중국서책 가운데 〈그림 8〉의 『欽定古今圖書集成』(奎中貴2555)은 황의로 장황한 〈그림 9〉의 『소학』보다 상대적으로 소색에 가깝다.[75]

국휼시에 진강서책을 고정지로 개장하는 본의는 상을 당한 이가 상복을 입는 것처럼 서책도 소색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승하한 영조가 현궁에서 볼 『소학』을 고정지로 개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자는 亡子를 보낼 때 완전히 죽은 자로 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산 사람처럼 대할 수 없기 때문에 명기를 만들어 전송한다고 하였다.[76] 영조는 『국조상례보편』을 수정할 때 부장품을 모두 제거할 수도 있지만 공자가 예를 아낀 뜻에 따라 종류와 수량을 줄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조의 뜻을 따라 정조는 어제 17권은 생전의 진상건으로 장황하고, 유서인 『소학』은 국휼시 진강서책의 장황으로 개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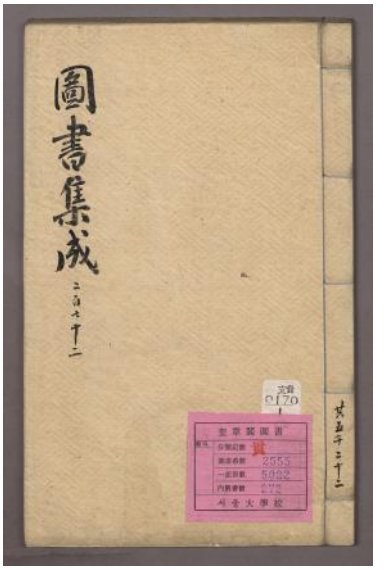

〈그림 8〉 고정지 책의

〈그림 9〉 황의 책의(奎11011)

75) 조계영, 2009「조선 후기 중국서책의 구입과 장황의 변화」『한국문화』 48, 29-33면.
76) 이욱, 앞의 책, 199면.

6. 맺음말

조선시대의 왕릉에 대한 연구 성과는 능침 공간의 상부와 제향 공간에 배치한 의물과 건축에 집중되어 있다. 본 논문은 왕릉에서 국왕의 시신이 안치된 현궁으로 눈을 돌려 부장품으로서의 서책을 주목하였다. 퇴광에 넣은 복완 목록에는 의복과 화장 도구 외에 서책궤가 발견된다. 왕릉에 넣은 서책은 '퇴광봉안유서'로 부르는데, 현재까지 그 존재 여부와 실물에 대해서는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영조의 왕릉인 원릉을 중심으로 조선후기의 왕릉 봉안 서책을 고찰하였다. 1776년에 거행된 영조의 국장은 『국조상례보편』에 따라 처음으로 치른 국왕의 장례이다. 원릉의 부장품은 『국조상례보편』의 규정에 따라 넣었는데 명기는 8개가 추가되었으며 복완은 규정과 동일하였다. 복완에는 화장도구 외에 어압각과 표신이 있었으며, 어제와 유서·유의가 포함되었다.

『국조상례보편』에서 유서로 지칭한 왕릉 봉안 서책은 17~18세기의 7기 왕릉에서 숙종의 명릉을 제외하고 모두 존재하였다. 효종의 영릉에는 『심경』을 비롯한 5종 19책의 서책을 봉안하였다. 숙종은 왕릉의 석물을 후릉과 같이 규모를 작게 만들고 퇴광에 서책과 의대를 넣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숙종의 신사년 전교는 왕릉의 석물에 대한 규정으로 영향을 끼쳤으나, 퇴광 봉안 서책은 전례대로 거행되었다. 따라서 명릉만 전례대로 서책을 봉안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본고는 원릉에 봉안한 어제와 『소학』의 내력과 장황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어제 17권은 1776년에 간행한 『열성어제』 23책 중에서 영조 어제에 해당하는 12책과 석판과 목판으로 찍어낸 『영묘어필』 2책, 그리고 등사본 어제 3책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국장 기간에 어제와 어필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은 영조가 생전에 그 기반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어제와 어필은 진상건으로 장황하여 빈전에 봉안하였다가 발인할 때에 산릉으로 옮겨졌다.

영조는 왕세제에 책봉된 후 처음으로 강독한 교재가 『소학』이었으며, 평생토록 『소학』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치국과 평천하의 근본을 『소학』에서 찾았다. 정조는 영조가 진강서책으로 사용하였던 『소학』을 소색에 가까운 고정지

로 개장하여 원릉에 순장하였다. 이는 공자가 망자를 대한 태도를 본받아 산자와 구별한 의미로 여겨진다. 영조의 어제와 어필, 그리고 『소학』은 발인반차에서 어제채여에 싣고 우보 앞에 배치하여 원릉까지 운반되었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규명한 원릉 봉안 서책은 정조의 주관으로 서책의 선택과 장황이 결정되었고, 발인반차에 어제채여가 등장한 특별한 사례이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규명된 원릉 봉안 서책은 조선후기의 왕릉 봉안 서책에 대한 常例와 변화를 가늠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조의 건릉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건릉의 사례는 19세기의 왕릉 봉안 서책에 대한 규례와 실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왕릉 봉안 서책, 원릉, 국조상례보편, 유서, 발인 반차, 어제 채여

투고일(2019. 2. 19), 심사시작일(2019. 2. 28), 심사완료일(2019. 3. 11)

〈Abstract〉

A Study of Books on Royal Tombs Enshrinement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Features of Wolleung(元陵) -

Cho, Gye-young *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served as a space to perform sad and happy ceremonies, namely, state funerals and sacrificial rites. A royal tomb is comprised of a tomb area characterized by the burial mount, a shrine for sacrificial rites, and the entrance area containing the Jaesil(齋室). Past research on royal tombs have been focused mostly on the visible upper areas, ceremonial objects found in shrines, and architectural features.

This paper examined books on the enshrinement of royal tomb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with a focus on the tomb of Yeongjo. The deceased kings were buried with burial accessories known as "myeonggi(明器)" and "bokwan(服玩)." Here, "bokwan" generally refers to clothes and cosmetic tools. In addition, it includes "yuseo(遺書)," meaning books left behind by the deceased." Books enshrined in royal tombs are evidenced by the mention of "book box(書册櫝)" in *Gukjang Dogam Uigwe*(國葬都監儀軌) and *Salleung Dogam Uigwe*(山陵都監儀軌).

The state funeral of Yeongjo organized by Jeongjo in 1776 was the first funeral of a king held in accordance with *Gukjo Sangrye Bopyeon*(國朝喪禮補編). This paper analyzed the furnishings of Yeongjo's tomb based on the rules of *Gukjo Sangrye Bopyeon*, and examined whether or not the royal tombs of the 17th to 18th century contained books left behind by the deceased. The books enshrined in Yeongjo's tomb were selected by Jeongjo himself, who also designated the traditional mounting method and position of the royal carriage for the funeral procession.

Key Words : Books on Royal Tombs Enshrinement, Wolleung(元陵), Gukjo Sangrye Bopyeon(國朝喪禮補編), yuseo(遺書), the royal carriage for the funeral procession

*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